

##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정 경과 및 주요 내용

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이 국회를 통과(‘07.4.30)하였습니다. 이 법은 장애계가 주장한 「장애인교육지원법안」과 교육부의 「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」에 대한 국회 상임위 대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. 법의 제정경과 및 주요내용을 보고 드립니다.

### 1. 추진경과

- 「장애인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」 등 특수교육 관련 의원안 8개와 정부의 「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」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(‘05.5~‘07.3)
  - 장애계는 장애인부모회 등이 주축이 된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「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」을 국회에 제출(‘06.5, 최순영 의원 대표발의)
  - 정부는 「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」 발의(‘07.2), 교육위 상정(‘07.4.12)
- 국회 공청회(‘07.4.18), 4차례에 걸친 협의(‘07.4.19~25), 교육위 간담회(‘07.4.25) 후 정부안을 중심으로 33개 조문 중 이견조문 14개에 대한 합의 도출
- 교육위원회 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으로 국회 상임위(‘07.4.25), 법사위(‘07.4.30), 본회의 통과(‘07.4.30)

### 2. 주요 쟁점

- 법 명칭
  - 장애계 : 장애를 가졌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교육지원이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도록 하기 위해 ‘장애인 등’ 추가
  - 정부 :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 대상이 아니므로 ‘장애인 등’ 포함 곤란
  - 합의 : ‘장애인 등’을 추가하여 ‘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’으로 수정
- ‘치료교육’을 ‘관련서비스’로 규정 여부 등
  - 장애계 : 현행법의 ‘치료교육’ 문구를 삭제하고, 기존 치료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장애아동 교육에 필요한 서비스 모두를 ‘관련서비스’로 규정

(‘07.05.01, 「장애인특수교육법」 제정 경과 등, 빈부격차·차별시정위원회)

※ 장애계는 현행 치료교육교사는 물리, 언어, 작업치료 등 7개의 치료 영역을 1인이 모두 가르치는 형태여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주장

○ 정부 : 쟁점이 되는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 등은 ‘관련서비스’에 포함하고 나머지 치료교육 영역은 현행 유지하면서 치료교사 전문성 강화 방안 모색

○ 합의 : 치료교육 조항 삭제, 관련서비스에 포함

#### □ 특수학급 설치기준 강화

○ 장애계 : 학교급별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존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학교급별로 구분·강화하여 모법에 규정

○ 정부 : 설치기준을 강화하되 시행령에 규정

○ 합의 : 유치·초·중·고 별로 설치기준을 구분·강화하여 모법에 규정

#### □ 특수교육 교원 배치기준 강화

○ 장애계 : 교원 배치 규정을 강화하여 모법에 규정

○ 정부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시행령을 수정하여 교원배치 규정 강화

○ 합의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시행령 수정, 교원배치 규정 강화(정부안)

### 3. 통과 법률의 주요 내용

#### □ 장애아동의 의무교육 연한 확대(제10조, 제19조)

○ 장애인지원종합대책(‘06.6.28)에 포함된 의무교육 연한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유치원,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화

#### □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조기발견체제 구축(제3조, 제14조, 제18조)

○ 3세미만 영아의 무상교육으로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 교육에 관한 절차 및 권리 규정 신설 → 사교육 등으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효과 기대

#### □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강화, 평생교육지원 조항 신설 (제5조, 제29조, 제32조, 제33조, 제34조)

- 장애인의 대학교육이나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, 대학 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, 편의제공 등 학습지원, 평생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

□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·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(제11조)

- 『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(‘03~‘07)』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
- ※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, 진단·평가, 교수·학습활동 지원, 순회교육, 가족지원 등 담당

□ 법 시행 시기 :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□ 주요 변경 내용

	기존법	제정법	입법 의의 및 효과
명칭	· 특수교육진흥법	·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	· 장애아동의 교육권 강화
의무 교육연한	· 초·중-의무교육 · 유치·고교-무상교육	· 유치·초·중·고교-의무교육	·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
장애영아 교육	내용 없음	· 3세미만 장애영아-무상교육 (전공과의 무상교육도 실시)	·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 가능, 장애아동 사교육비 절감
고등교육	내용 없음	· 대학 내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마련, 각종 학습 지원 근거 마련	· 장애인의 고등교육권 확보
평생교육	내용 없음	· 장애인의 평생교육 근거 마련	·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근거 마련
특수교육 실태조사	· 5년마다 실시	· 3년마다 실시	· 특수교육 정책 수립의 정확성 제고
특수학급 설치기준	· 시행령 규정 : 1~12인의 경우 1개 학급 설치	· 유치원 : 1~4인일 경우 1개,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 · 초·중·중학교 : 1~6인일 경우 1개,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 · 고등학교 : 1~7인일 경우 1개, 초과시 2개 학급 이상 설치	· 설치 기준 강화하여 모법에 명시
특수교육 지원센터	내용 없음	· 지역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을 모법에 명시	· 특수교육 관련 지원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
치료교육	·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 교원 배치하여 치료교육 실시	· 치료교육 조항 삭제, 치료지원을 관련서비스에 포함	· 의료적 전문성이 필요한 물리치료 등의 서비스 질 제고

## 4 향후 추진 계획

### 시행령 준비

- ’07년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마련
- 시행령 마련 작업시 치료교육 관련 쟁점의 해결방안 동시 강구(교육부)

### 「제3차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(’08~’12)」 수립

- 본 법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종합계획 수립 추진